

# 직무발명규정

제정 2007. 3. 1

개정 2009.12. 1

개정 2011. 3.2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근무하는 교직원(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함)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적재산권”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본교 교직원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·의장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통칭한다.
2. “직무발명”이라 함은 교직원이 본교 재직 시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발명을 말한다.
3. 발명자”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.
4. “외부발명자”라 함은 교직원과 공동 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발명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)** ①본교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서(별지 서식 제1호)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때 직무발명이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12.1)

②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직무발명 및 그 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적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다.(개정 2011.3.21)

③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승계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3.21)

**제4조(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양도)** ①본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에 발명자는 양도증(별지 서식 제2호)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,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 (개정 2009.12.1)

②본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명자는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또는 그에 따르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**제5조(특허출원 및 비용부담)** ①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양도증을 접수한 후 본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3.21)

②국내와 해외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 중 발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,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의 제반 소요비용은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다. 다만,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또는 협의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.

③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적재산권의 유지에 소기의 성과가 기대되지 아니 할 경우에 본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산권의 유지를 포기할 수 있다.

**제6조(보상)** ①본교는 발명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한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 한다.

②성과보상금은 수익금 중 특허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,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

한다. 다만, 외부기관지원 연구비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 외부기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수익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: 특허관련비용 공제 후 금액의 2/3 지급(개정 2011.3.21)
2. 수익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: 수익금 1억원까지는 제1호를 적용하고 수익금 1억원 이상분에 대하여 1/2 지급(개정 2011.3.21)

**제7조(퇴직 및 사망 시의 보상)**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의 지급은 유효하며, 사망한 경우에는 지정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연락처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. (개정 2009.12.1)

**제8조(보상금의 반환)** 특허의 내용 등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져 특허등록이 취소된 경우 발명자는 지급 받은 보상금 및 특허등록까지의 본교가 지원한 소요경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발명자의 의무)** 직무발명을 본교가 승계하는 경우에 특허출원 및 관리 전반에 관한 본교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기타 산업재산권)** 직무와 관련된 기타 지적재산권의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1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 [서식 제1호]

<b>발 명 신 고 서</b>			
발명의 명칭			
발명자	성명	지분(%)	소속
관 련 연구과제	과제번호 (지원기관)	연구과제명	연구기간
출원희망국			
특 징 적용가능성 기대 효과			
관련기업	국내		
	국외		
<p>상기의 발명을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 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고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을지대학교 총장 귀하</b></p>			

양 도 증			
발명의 명 칭			
출원번호			
양 도 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양 수 인	성 명	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(인)	
	주 소		
<p>위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직무발명관리규정에 따라 을지대학교에 양도합니다.</p> <p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><b>을지대학교 총장 귀하</b></p>			